개발용역계약서

박경신

kyungsinpark@korea.ac.kr

강의순서

1. 개발용역계약서의 구조 – 용역v근로
   1) 개발용역 – 실연권(녹음, 방송)과의 관계
   2) 단순용역 – 독립사업자 → 저작권 발생 → 개발용역
   3) 개발근로 – 업무상 창작물 조항 → 단순근로
   4) 단순근로
2. 표준기술지원용역(공연)계약서 검토 (문체부)
3. 샘플계약서 검토 – “공연용역출연계약서”
4. 샘플계약서 검토 – “음악공연계약서 1+2”

개발용역계약서 (연출, 출연,녹음, 방송, 음악/사운드디자인, 의상/무대디자인)

- 용역의 범위 – Cf. master service agreement과 work order
- 용역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: 협상을 가장 자세히 해야 할 부분
- 용역의 마감일 – 매 촬영/공연일, 지체상금 (불가항력 등 예외)
- 용역보수: 시간별/건별, 지급시점, 지연이자
- 관련 장비 및 재료 비용에 대한 부담, 작업장 안전책임
- 공동작업의 경우: 분업의 범위
- 개발계약서의 경우 지적재산권 소유 문제 및 라이선스
  - cf. 고용관계 -> 직무발명/업무상창작
- 원천기술/저작물: “결과물의 100%” →별도의 라이선스 및 로열티
- 크레딧의 명기 및 성명표시권
- 원청에 직접청구권리(채권양도) v. 노동자에 미지급시 계약위반
- 품질보증, 지적재산권불침해 보증
- 용역내용의 변경 – 권한 및 보수변경

비교용: 근로계약서 (스태프)

- 용역의 범위 - 너무 자세할 필요는 없음
- 용역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: 해고사유
- 용역의 마감일 – 매 촬영/공연일
- 용역보수: 시간별/건별, 지급시점, 지연이자
- 관련 장비 및 재료 비용, 작업장 안전책임 – 모두 사용자부담
- 지적재산권 : 고용관계 -> 직무발명/업무상창작
- 원천기술/저작물: “결과물의 100%” → 별도의 로열티
- 크레딧의 명기 및 성명표시권
- 지적재산권불침해 보증
- 업무내용의 변경 – 권한 및 보수변경

공통사항

- 보증, 보증부인
  - 품질보증
  - 지적재산권 불침해 보증
- 상호 손해배상책임 조항: 반드시 필요치는 않음
- 책임제한
- 계약수정: 서면으로만?
- 언어: 계약서는 하나 뿐이다! (“동등한 효력을 갖는다”)
- 양도: 일방의 동의없이 불가능하다는 내용, 없으면 양도가능 (조건: “불리한 변화” // 조항의 필요성 예) 경쟁업체에서 경우
- 변호사비용: 패자부담.
- 준거법:
- 분쟁해결: 비용문제가 가장 중요. 중재+중재지 - 법원의 관할, 사법부가 정함. 항소없음.비밀유지.

저작권계약서(시나리오,웹툰, 출판, 사전용역)